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무의 위임)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.

- 1.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: 당해 기관의 장
- 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물품 : 시의회사무처장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·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행정관리국(회계과)란을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직접 또는 우편”을 “직접·우편 또는 인터넷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시정개발담당관”을 “조직제도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“제도개선담당사무관”을 “시민창안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